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전에 정해진 석유 공급가격에 따른 실정산 의무 부여 등>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11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681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가. 석유제품의 공급 시 가격 정산 제도 정비	4
나. 부당 공급·판매 행위의 금지 및 공표	10
다. 석유판매가격 최고액·최저액 설정 기준 위임	13
라. 벌칙	16

I. 제안경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1)】

1. 제 안 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16.
3. 회부연월일 : 2026. 3. 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1)】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23.
3. 회부연월일 : 2026.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511)】

석유제품은 전반적인 국가 산업 활동은 물론, 국민 경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에너지 자원으로 최근 중동 지역 분쟁 등에 의해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국민 경제생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급가격을 미리 확정하지 않고 거래 후에 정산하는 관행에 따라 그 거래가격이 불투명하며, 이는 석유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그 부담이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경우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설정의 요건·기간 등 설정 기준·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유제품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후단, 제38조의3, 제45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681)】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정유사로 대표되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함에 있어 공급 당시 통보 가격을 결정·통지하고서 뒤늦게 당초 통보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하여 정산하는 관행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현행법상 석유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요인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또는 공급 당시 통보 또는 계약한 석유제품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

로 정산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지할 구체적인 금지 규정과 처벌 조항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판매업자들까지 오해를 받거나,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왜곡되어 전국적인 수급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석유정제업자 등의 공급가액 확정 및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여 유통 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내역 공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5 및 제39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가. 석유제품의 공급 시 가격 정산 제도 정비

김종민의원안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하여금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가격으로 실거래 및 정산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이와 유사하게, 윤준병의원안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시점에 통보 또는 계약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당초 통보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하여 정산할 수 없도록 하며, 공급계약서에 가격 결정방식, 정산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김종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신 설>	제38조의3(석유제품 공급 가격 고지의무 등) ①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	제38조의5(석유제품의 공급가격 결정 및 정산 등) ①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 행	김종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38조의3 · 제38조의4 (생 략)	다. ②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에 고지된 공급가격으로 실거래 및 정산을 하여야 한다.	한 공급 시점에 통보 또는 계약한 공급가액(이하 “당초 통보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급 이후에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하여 정산하거나 석유판매업자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수정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석유제품의 공급계약서에는 가격 결정 방식, 정산 시기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4 · 제38조의5 (현행 제38조의3 및 제38조의4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제품 공급가격의 고지의무 등에 관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김종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법 제23조제1항¹⁾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38조의2²⁾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로 하여금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영업

- 1)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2)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석유제품 가격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공개한다.
 ③ 석유판매업자는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석유제품 가격표시판의 종류, 위치, 표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가격제와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제도에 따른 사항 외에 석유정제업자 등과 석유판매업자 간 거래 시 공급가격 및 정산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따라 실제 국내 석유 유통 구조에서는 정유사(석유정제업자)와 석유판매업자 간 거래에서 석유제품 공급 시점에 가격이 확정되지 않고 이후 정산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사후정산 방식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동지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하여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 상황에서 이와 같은 사후정산 관행으로 인하여 가격 결정 구조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석유판매업자의 최종 판매가격 결정 시 보수적인 가격 책정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특히, 국제 유가 급등 요인이 실제 국내 석유제품 시장에 반영되기 까지 시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자 입장에서는 불투명한 정산 구조로 인하여 가격 인상요인을 최종 소비자 가격에 미리 반영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반대로 가격이 안정화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석유정제업자와의 거래 계약에서 최종 정산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미리 이를 반영하여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음.

이를 고려할 때, 김종민의원안과 윤준병의원안에 따른 경우 석유정제업자등이 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하였다가 사후에 정산하는 구조가 개선되어 공급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석유판매업자의 보수적인 가격 책정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사후정산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는 개정안들과 관련하여서는,

석유 유통시장의 가격결정 구조 투명화를 통한 시장참여자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 필요성과 석유정제업자와 석유판매업자간 합의를 통해 개별 석유판매업자의 사정에 맞는 석유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아가, 김종민의원안은 석유제품의 사전 공급가격 고지 및 실정산을 의무화하고 있음에 비해 윤준병의원안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로서 안 제38조의5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통보한 공급
가액이 아닌 가격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구체
적인 의무화 수준과 관련하여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 부칙을 살펴보면, 윤준병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음에 비해, 김종민의원안은 시행일을 공
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석유제품 공급가격의 고지의무에
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바,

사후정산제 폐지에 따른 시장 내 참여자들의 준비 상황 및 관련 관
리·감독 체계 구축 계획을 감안하여 시행일을 정하고, 정산 방식 의무
화제도 도입 시점과 관련된 적용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나. 부당 공급·판매 행위의 금지 및 공표

윤준병의원안은 대내외적 여건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여 공급·판매하는 행위나 안 제38조의5에 따른 실정산 시 당초 통보가액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윤준병의원안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 국제석유거래업 자 · 석유판매업자 · 석유비축대행업 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 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 의 종류 및 설치 · 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39조(행위의 금지) ① ----- ----- ----- ----- ----- ----- -----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u>공급받은 가격의 인상 요인이 없</u> <u>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상승,</u> <u>수급 상황 등 대내외적 여건을 악</u> <u>용하여 부당하게 석유제품 또는</u> <u>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여</u> <u>공급 · 판매하는 행위</u>
<신설>	11. 제38조의5를 위반하여 당초 통보

현 행	윤준병의원안
10.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9조의2(공표)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가. ~ 다. (생 략) <신 설> <신 설>	<u>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산하거나 판매업자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행위</u>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공표)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3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u>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여 공급·판매한 행위</u> 마. 제39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u>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산하거나 판매업자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수정하여 적용한 행위</u>

윤준병의원안에 따를 경우 석유판매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를 금지하고 석유정제업자등이 당초 통보한 공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유정제업자등의 실정산 시 사전 통보된 공급가액 준수 의무화를 실효적으로 도입하고, 해당 제도의 도입이 최종 석유판매가격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석유판매업자의 적정 가격 책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39조제1항제10호와 관련하여, 석유판매가격은 공급가격 외 판매사업자의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 비용과 적정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사업자별 상이한 영업환경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여 공급·판매하는 행위”를 실제 시장 상황에서 판단하여 포섭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함.

다. 석유판매가격 최고액·최저액 설정 기준 위임

김종민의원안은 현행법 제23조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는 경우 그 내용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김종민의원안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 ----- ----- ----- ----- ----- ----- ----- ----- ----- -----, 이 경우 그 설정 요건·기간·대상 유종 및 지역별 설정 금액 등 최고액 또는 최저액의 설정 기준·내용과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한다.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3조제1항³⁾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석유의 수입·판

- 3)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석유제품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의 설정 기준 및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통상부는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⁴⁾에 근거하여 석유제품의 최고액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경우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및 최저액의 산정에 관한

③ 정부는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4)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산정 방식) ① 기준기간은 14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최고액을 최초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석유가격의 변동성, 국내 석유제품의 수급 상황,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최고액을 조정하는 경우 유종별 최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직전 최고액에서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 × ('기준기간 직전 14일 동안 일일 국제석유제품가격의 평균' 대비 '기준기간 동안 일일 국제석유제품가격의 평균')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제세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최고액의 적용기간 동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제세금의 인하가 있거나 예상될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고액에서 제세금 인하분 또는 인하 예상분을 제외한 가격을 최고액으로 지정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하여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 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에 한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고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최고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석유정제업자는 제5조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최고액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설정 기준과 내용, 방식에 관한 세부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23조제1항 후단은 입법형식상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또는 최저액 지정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한다면 산업통상부장관 고시가 아닌 시행령에 해당 사항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벌칙

개정안들은 석유판매가격을 사전 고지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해당 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실거래 및 정산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추가로, 윤준병의원안은 공급받은 가격의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여건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여 공급·판매한 석유판매업자(안 제39조제1항제10호)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김종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제45조(벌칙) ----- ----- ----- ----- -----.	제45조(벌칙) ----- ----- ----- ----- -----.
<u><신 설></u>	1. 제3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에 고지된 공급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실거래 및 정산을 한 자	

현 행	김종민의원안	윤준병의원안
1. ~ 9. (생 략) 10. 제39조제1항제5호 부터 제7호까지 또 <u>는 같은 조 제2항에</u>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신 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 략) 10. 제39조제1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 제8 호 또는 <u>제10호에</u>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11. (생 략)	3. ~ 11. (현행 제1호 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12. (현행 제10호와 같 음)	1. ~ 9. (현행과 같음) 10. ----- ----- <u>제10호 및 제11호에</u> ----- ----- 11. <u>제39조제2항에 따</u> <u>른 행위의 금지를</u> <u>위반한 자</u> 제46조(벌칙)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 -----<u>제12호에</u>----- ----- ----- 11. (현행과 같음)

벌칙 조항을 도입할 경우 석유정제업자 등의 공급가격과 괴리된 정
산 가격 책정 및 석유판매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를 방지함으
로써 석유제품의 가격 왜곡 및 시장 혼란을 예방하고 수급 안정에 기

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① 석유정제업자등의 공급가격 사전 고지 및 실정산 의무와 ② 석유판매업자 등의 부당한 가격인상 금지 의무 신설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해지는 구체적인 의무의 수준 및 내용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8